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39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도 단지내도로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학 구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기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